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53968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8. 13 선고 2018나20394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53968 판결

전문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황희동

피고D 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이응진, 이종근

변론 종결 2018. 5. 24.

판결 선고 2018. 6.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536,000,000원, 원고 B에게 630,000,000원, 원고 C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원고 A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E, F, G는 소외 H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20,000주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가 2015. 12. 11. 그 중 88,080주를 1주당 875,000원, 총 770억 7,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12. 31. 위 주식 매도를 거래 종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매매 후 회사운영과 잔여주식매수의무 등에 관하여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주간계약

본 주주간계약은 2015. 12. 11.에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다음의 기존 주주들(이하 '기존 주주들')

1. 원고 A
2. 원고 B
3. 원고 C

(2) 피고(투자자, 이하 기존주주들과 투자자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각각 개별적으로 '당사자')

(a) 기존 주주들은 본 주주간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120,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b) 투자자는 2015. 12. 11. 본 주주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기존 주주들 및 E, F, G로부터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총 88,080주(발행주식총수의 73.4%, 이하 '본건 구주')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건 주식매매계약은 2015. 12. 31. 이전에 거래종결될 예정이다.

(c) 본건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 이후 기존 주주들은 대상회사 총 발행주식 120,000주 중 본건 구주를 제외한 나머지 31,920주(발행주식총수의 26.6%, 이하 '잔여주식')를 소유하고, 투자자는 본건 구주를 소유하게 된다.

(d) 투자자가 본건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 이후 대상회사의 주주가 됨에 따라, 투자자와 기존 주주들은 대상회사의 운영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잔여주식의 처분 등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기존 주주들	A	25,920	21.6%
B	3,600	3%	
C	2,400	2%	
소계	31,920	26.6%	
투자자	-	88,080	73.4%
총 발행주식수	-	120,000	100%

제2조 이사회의 구성

2.1 이사회의 구성. 당사자들은 대상회사 이사회를 이사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투자자는 대상회사의 이사 4인 및 감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기존 주주들은 이사 1인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2.3 대표이사 선임. 투자자는 제2.1항에 따라 지명하는 이사 중 1인을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로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일에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종결을 조건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투자자는 대상회사로 하여금 대상회사의 전 대표이사 A에 대하여 잔여주식 매매계약

거래종결일까지 회장의 직함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한다(단, 직함은 경영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대상회사의 경영

3.1. 사전 합의 사항. 당사자들은 본 주주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상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인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c)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의 보수 또는 성과금의 지급(단, 연간총액이 금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잔여주식의 매매

4.1. 잔여주식 매수의무, 법령과 정관에 따라 대상회사의 2017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승인된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상회사 포함, 이하 동일)를 통하여 제4.2항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에 따라 기존 주주들로부터 잔여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잔여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2. 잔여주식 매매계약의 내용과 조건.

(a) 매매대상 주식 수: 기존주주들이 보유한 잔여주식 31,920주(발행주식총수의 26.6%)

(b) 1주당 매매가격: 대상회사의 2016년 및 제2017년 2개년도 재무제표상 EBITDA(EBITDA = 일반기업회계기준(또는 K-IFRS)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현금흐름표) + 무형자산상각비(현금흐름표)) 합계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여주식수로 나눈 금액

(c) 체결 시한: 대상회사의 2017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승인된 날로부터 1개월(단, 대상회사를 통하여 기존주주들로부터 잔여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

(d) 거래종결 시한: 잔여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다만, 구체적인 거래종결 시점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위 시한 내에서 결정한다.

(e) 진술 및 보장: 기존 주주들은 대상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않는다.

제9조 손해배상, 위약벌 및 특별약정

9.1.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본 주주간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3 특별약정, 본 주주간계약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특별히 약정한다. 다만, 위 특별약정은 제9.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a) 투자자가 제3.1항에 따른 사전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건 주식매매계약상 1주당 매매가액에 잔여주식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잔여주식 전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피고는 대상회사의 임원들에게 보수 및 성과급을 15억 원 이상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원고들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합의 없이 아래와 같이 대상회사의 임원들에게 위 15억 원을 초과하는 1,612,136,620원을 지급하였다.

회장	원고 A	95. 11. 25.	총괄	220,010,000
대표이사	I	16. 01. 14.	총괄	145,516,610
부사장	원고 C	87. 06. 05.	영업	247,502,000
부사장	J	12. 07. 16.	영업	73,500,000
부사장	K	12. 1. 2.	총괄	6,177,000
부사장	L	15. 12. 31.	총괄	140,000,000
전무	M	15. 12. 31.	CFO	110,012,000
전무	N	16. 07. 28.	영업	35,045,870
전무	B	05. 01. 17.	영업	43,478,000
전무	O	90. 07. 13.	생산	85,498,000
전무	P	05. 04. 01.	영업	88,592,000
상무보	Q	11. 06. 27.	생산	64,064,000
상무보	R	13. 04. 08.	생산	67,200,000
전문위원	S	15. 30. 06.	설계	63,000,000
전문위원	T	04. 06. 08.	생산	58,725,000
전문위원	U	06. 03. 02.	설계	60,900,000

회장	원고 A	95. 11. 25.	총괄	220,010,000
전문위원	V	15. 02. 02.	생산	47,250,000
전문위원	W	16. 09. 01.	설계	19,287,000
전문위원	X	16. 07. 21.	설계	36,379,140
합계				1,612,136,620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3의 (a)항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한 잔여주식의 수량에 1주당 875,000원을 곱한 금액, 즉 원고 A에게 226억 8,000만 원, 원고 B에게 31억 5,000만 원, 원고 C에게 2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잔여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위 각 주식매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위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1)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회장 또는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3항에 의한 예우 제공 차원에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 C도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A, C에 대한 보수지급액은 위 주주간계약 제3.1의 (c)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연간 총액 15억 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2) 대상회사의 전문위원의 권한 및 처우 등은 일률적이지 않고 일부 전문위원들은 임원들이 받는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바, 전문위원들이 모두 이 사건 조항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3의 (a)항은 위약벌 약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20955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가 15억 원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임원'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위 조항의 '임원'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범위에 원고 A, 원고 C, 전문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 A이 이 사건 조항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체결 이후에도 원고 A이 대상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송부한 2016년 주요 경영진 내역 및 11월 재무제표'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에 회장 원고 A에 대한 2016년 연봉 220,000,000원이 임원급여 합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임원'의 개념에는 원고 A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 A의 연봉을 대상회사의 2016년 임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액에서 제외하면, 피고가 2016년도에 대상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 및 성과금으로 지급한 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그러므로 원고 C, 전문위원이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1).

①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대표이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경영에 실제 참여하다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체결 후인 2015. 12. 31.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에게 대상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3항은 '투자자는 대상회사로 하여금 대상회사의 전 대표이사 A에 대하여 잔여주식 매매계약 거래종결일까지 회장의 직함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 단서에는 '직함은 경영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A이 대상회사의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별도로 원고 A에게 회장의 직함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거래종결된 2015. 12. 31. 이후에는 소외 1이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최종 결재권자로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이 대상회사에서 실제 결재권자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대상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거래종결된 후 대표이사로 I, 부사장으로 L, 전무로 M, N 등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여 그동안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⑤ 대상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이었던 대표이사 원고 A, 원고 C, 사내이사 E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거래종결된 2015. 12. 31. 모두 각자의 직위에서 사임하였다.

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은 대상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일부 주식(73.4%)과 대상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먼저 양도하고, 원고들의 잔여주식(26.6%) 31,920주에 대하여는 2017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에 피고가 제4.2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합의사항으로 정하여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주당 매매가격을 위 제4.2항에서 정한 금액²⁾ 이 아닌 당초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금액(875,000원)으로 계산하여 전부 매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내용, 주주간계약 체결의 목적과 경위, 이 사건 조항이 잔여주식의 매매가액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개념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여기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는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상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원고 A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2016년도 대상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 및 성과금으로 합계 15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이상현

판사 조용희

판사 구준모

1)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했던 금액 1,648,600,000원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대상회사의 2016년 및 제2017년 2개년도 재무제표상 EBITDA(EBITDA =

일반기업회계기준(또는 K-IFRS)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현금흐름표) + 무형자산상각비(현금흐름표)) 합계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여주식수로 나눈 금액